

##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초빙 공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 1. 공모 직위 및 근무조건

#### 가. 공모 직위

직 위	인 원	직무내용
원장 (상근)	1명	·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총괄하고 기관을 대표함

#### 나. 근무조건

구분	내용
임 기	· 임명일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가능)
보 수	· 연봉제(중앙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결정)
근무지	·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 2. 응모자격 및 직무수행요건

### 가. 응모 자격

○ (자격요건) 아래 자격요건(1.~4.)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1.~3.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름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결격사유) 중앙사회서비스원 「정관」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고> 결격사유 관련 규정 및 법 조항 참조

### 나. 직무수행요건

전문성	·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현안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리더십 및 경영능력	·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경영 능력
조직 및 직원친화력	· 조직 화합을 통해 기관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변화, 위기에 따른 갈등·분쟁의 해결 능력
공직윤리 및 청렴성	·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 준수 ·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 윤리의식

### 3. 제출 서류

- 가. 지원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나. 자기 소개서(경력 및 업무성과 중심, A4용지 4매 이내)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다. 직무 수행 계획서(경영관리·주요사업 포함, A4용지 10매 이내)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라.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서류 등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별 발행) 1부
  -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전문학사 이상
  -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원서에 기록한 각종 업적(논문 발표·저서 발간 등, 연구용역 실적, 주요 포상 및 기타 실적·활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 논문발표 실적 등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한 내용의 증빙자료 일체(전자파일 보고서 등)는 채번하여 USB로 제출 (단, 전자파일이 없는 경우 표지·뒷표지·목차를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 ※ 지원서에 기재하는 각종 업적은 공고일('26.1.12.)을 기준으로 하며, 증빙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 소정 서식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www.kcpass.or.kr> > 알림마당 >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6. 1. 12.(월) ~ '26. 1. 27.(화)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1) 방문제출은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근무시간(9시~18시) 내 접수
  - 2) 봉투겉면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 지원서류' 기재
  - 3)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배송 지연 및 분실 등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유선으로 지원서류 도착 여부 확인 바람)
- (☎ 02-2271-9041)

다. 접 수 처: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경영기획부)

## 5.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평가기준:** 전문성(20점), 경영능력·혁신성(20점), 직위적합성(15점), 공직윤리 및 청렴성(15점), 비전적합성(15점), 실현가능성(15점)

나. 면접심사: 면접일시 및 장소 등 개별 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심사 전 통보된 기일까지 발표 자료(PPT)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기준:** 전문성 및 대표성(30점), 리더십(10점), 혁신능력(10점), 경영능력(10점), 조직 및 직원친화력(10점), 공직윤리 및 인성(10점), 직위적합성(20점)

## 6.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 추천 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청구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jjh@kcpass.or.kr)

- (반환방법)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발송 또는 직접 수령

라. 합격자 결정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다. 응모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결과 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는 유선 또는 문자발송으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사.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경영기획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271-9041)
- ※ (문의시간)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중앙사회서비스원 「정관」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③ (생략)